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연차휴가계산시 정계로 인한 정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A 주휴일 및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동 기간을 제

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주휴·월차휴가·연차휴가의 성질을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Q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한술노무사사무소(031-877-7392-3)

A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 된 자의 해고기간도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한술노무사사무소(031-877-739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사용료의 지급여부】

Q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입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입안을 매수한 마이모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묘기지권이란 것이 있어서 이장 당할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 마이모 요구하는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요?

A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物權)입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

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언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분봉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 또는 암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2.28. 94다37912)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며,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12.23. 94다5530)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奉祀)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됩니다.(대법원 1994.8.26. 94다28970)

또한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하여 관례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279조, 제366조 단서, 대법원 1995.2.28. 94다37912)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성관계를 하지 않는 여성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A 아니요. 성교를 했던 하지 않았건 간에 모든 여성은 18세에서부터(성생활을 한다면 그 이전부터) 매

년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갱년기 후에도 평생 검진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 성인의 압도적인 다수(88%)가 정답을 맞추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별개인 것이다.

킨케이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은 부인에게서 매년 몇 백 명의 편지를 받고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우연히도 독신자가 모든 결혼 경력을 가진 그룹보다도 독점이 낮았다. 독신으로 몇 사람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산부인과 검진이 특히 중요하다. 정기적인 검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성병에 감염되어 골반 염증성 질환에 잘 걸리기 때문이다. 골반 염증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불임과 연관된다.

【킨케이 보고서】 발췌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Q 심야기기로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녹물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A 수기 자체 또는 배관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녹물 또는 이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급수자체가 불량 시에는 수도사업소로 연락하시고 탱크 청소 및 배관자체를 스텐레스 또는 동관 등으로 교체하시면 이러한 현상이 없어집니다.

◆심야기기 고장시 점검 및 수리방법
배선용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것은 배선이 단락 되어 있는 경우로 단락부를 절연 처리한 후 배선용 차단기를

동작시키면 됩니다. 계량장치가 심야시간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것은 전력량계, 타임스위치 및 타임스위치와 조합되는 전자접촉기 중 하나가 불량한 경우로 한전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것은 히터의 절연이 불량하거나, 누수 등에 의해 보온재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경우이며 히터단지의 절연부위를 청소하여 점검한 후 그래도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 히터를 교환하고 보온재는 건조시키거나 또는 교환한다.

온도조절기의 온도조정이 되지 않거나 동작이 되지 않으면 물이 없는

상태로 고온에서 반응하게 하였거나 제작불량이며 탱크에 물이 없는가 확인한 후 온도 조절기를 확인교환한다.

히터가 가열되지 않거나 많은 스케일이 끼어 있으면 히터가 단선되어 있거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히터를 교환하거나 스케일을 제거한다. 배관이 부식이상 길 경우 전기온수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 배관온도도 충분히 한다.

온수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온수사용방법이 부적합하거나 전기온수기의 탱크용량이 온수사용량에 비해 적은 경우이며 온수사용방법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히터를 설치 또는 적절한 탱크용량의 전기온수기로 바꾼다.

사용적용온도 및 계절에 맞도록 사용량이 많을 때는 설치 85도, 적을 때는 설치 65도 정도로 설정한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코골이,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3)

두 번째 프로그램인 수면자세 교정 프로그램에서는 환자로 하여금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게끔 하여 코골이를 줄이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대뇌의 각성으로 인한 낮의 졸라움과 피곤함을 줄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하게 디자인된 경추베개를 사용하게 하게 도우며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코골이 개선 티셔츠를 처방하여 그 개선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돕는 전신베개라던가 췌기베개 등을 이용하여 올바른 코를 덜골게 하게 위한 수면자세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이는 본 클리닉에서 직접 교안하고 제작하여 사용하는 베개도 있고 미국 코골이 전문 신경과 의사인 Dr. Zuber박사가 직접

교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에 의해 100%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면자세 교정치료는 이미 많은 논문들과 연구에 의해 그 쓰임이 지지받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구강내 보조장치는 아래턱을 약간 앞으로 당겨 호흡기도의 면적을

넓혀주거나 혀를 앞으로 당겨서 코로 들어온 공기가 큰 혀에 막히지 않고 보다 쉽게 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장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안전청 (FDA)에는 대략 10가지 남짓의 코골이용 구강내 기구들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치과에서 처방되고 사용되어 있어 이비인후과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코골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치료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호전을 가

져올 수 있는 질병임을 고려 해본다면 이 또한 치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 고 간과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저는 독일의 코골이 치료 전문가인 Dr. Toussaint 박사와 긴밀한 교류하에 이미 독일을 위시한 유럽권의 병원에서 그 효과를 검증 받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코골이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지 않은 비수술적인 방법들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 분들은 코골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목젓을 절제하거나 입천장을 성형하는 방법이나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쓰임이 불편한 상기도 양압치료라는 고가의 치료장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치료 방법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특효 치료방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 또한 저의 외래에서 코골이 진단과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점차 많은 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코골이 없는 시원한 잠을 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48)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례: 복합운송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외법인 또는 외국인과 거래에 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를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 중 국내에 외주를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질의.

A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송수산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외국환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영의 세율을 적

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운송수산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를 적용이 안 되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에 직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Socks Bank 포천섬유

Socks Bank 포천섬유는 양질의 원단 사용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급 선물용 양말을 생산합니다.

단체·회사 로고 제작 / 선물용·각종 행사용

Socks Bank 포천섬유

- 대표 윤춘근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9-22
- 사무실: Tel 031) 533-6293
- 공 장: Tel 031)532-0520
- E-mail: ycg6293@hanmail.net
- Fax : 031)532-0513
- H · P : 010-3345-6293